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3. 6. 13.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188
----------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강남구청장(생활체육과)

나. 상정의결

-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3. 6. 13.)  
“수정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미래문화국장 : 문경수 )

가. 제안이유

-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저출산 국가위기 상황에서 선도적인 역할수행을 위해 자녀 관련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개정하고, 나이 계산 방법이 만(滿나)이로 통일됨에 따라, 나이 관련 조항도 개정함. 또한 돌산체육공원 설치에 따라 공원 체육시설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불필요한 문구인 ‘제1장 총 칙’ 삭제함.
- 두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체육시설 감면율을 10%에서 30%로 변경하고, 한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감면율을 10%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나이 규정조항에서 “만”자를 삭제함(안 제9조제3항).
- 강남구립 체육시설 현황에 돌산체육공원을 추가함(안 별표 1).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행정기본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일부개정][시행 2023. 6. 28.]」
- 예산조치 : 271,177천원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3.4.28. ~ 2023.5.18.)
    - 의견 :
  -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되는 본 조례는 현재는 “장” 구분이 없음에도 “제1장 총 칙”이라는 표기가 있어 불필요한 표기로 삭제되어야 할 것임
  - 본문 중 “제1장 총 칙”의 표기를 삭제해야 함.
- 안 제9조 중 정비 사항은 다음 세 가지임.
  - 첫째, 제3항제1호및제3호 내 “만 13세”를 “13세”로 하여 “만”자를 삭제 하려는 것임.
    - 정부(법제처)는 오는 6월 28일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을 명문화하는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시행하려 하며, 이미 연초부터 “만 나이” 개선은 정부 국정 과제로 알려져 왔음.

행정기본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정]	행정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신 설〉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시행 2022. 12. 13] [법률 제19069호, 2022. 12. 13, 일부개정]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58조(연령의 계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807조(혼인적령) <b>18세</b> 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제1061조(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제1061조(유언적령) <b>17세</b> 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 둘째, 저출산 시대로 인한 스포츠 인력감소로 생활스포츠의 주민 친화력 제고를 통한 스포츠 인력 확대를 위해 제3항제1호의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는 50% 감면은 형평성 차원에서 유공자·등록 장애인 등과 같은 감면 수준으로, 현행을 유지하지만
  -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는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30%까지 확대하고 그 내용을 “안 제9조제3항제2호가목”에 신설하려는 것임.
- 셋째, 여기에 덧붙여 10% 감면 대상을 한 자녀 가정까지 확대하고자 “제3항제3호가목”의 내용을 “한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로 하려는 것임.

□ 따라서 ‘신·구조문대비표’로 보는 바와 같이 안 제3항제2호및제3호 상 6세 미만인 5세 이하 영유아는 한 자녀 가정이건 두 자녀 가정이건 30% 감면을 받고, 세 자녀 이상 가정부터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집행기관 생활체육과 조사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1 자녀 10% 감면”은 우리 구가 처음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함.

□ 안 제3조는 제2항 중 <별표1>의 내용에 현재 공원녹지과가 추진하고 2023년 9월 준공예정인 돌산체육공원의 위치와 기능을 반영하려는 것임.

**<돌산체육공원 개요 (2023년 9월 준공 예정 / 공원명칭 (변경)공모 중)>**



- 위 치 : 세곡동 산1-7번지 일대
- 면 적 : 44,920㎡
- 주요시설 : 체육시설, 녹지, 부대시설, 주차장(60면)
- 추진경위 (공원녹지과)
  - 2015.09.10. : 조성계획 결정
  - 2022.03.15. : 공사착공
  - 2023.06. : 준공예정

구분	주요시설	면적	관리부서	비고
공원녹지	산책로, 진입광장, 잔디광장	5,659㎡	공원녹지과	
	운동기구 및 휴게시설	466㎡		
체육시설	축구장 1면 (인조잔디/115m×78m)	9,235㎡	생활체육과	도시관리공단 위탁 예정
	테니스장 4면 (인조잔디/65m×37m)	2,405㎡		
	다목적구장 (마사토/35m×27m)	945㎡	공원녹지과	
부대시설	관리실	528㎡	생활체육과	도시관리공단 위탁 예정
	탈의실 및 샤워실	294㎡		
	주차장 (60면)	2,074㎡	공원녹지과	
	화장실	111㎡		

□ 생활체육과는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지방공기업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시설관리 위탁을 추진하려 3~4개월분의 3명 인건비 등 대행사업비를 전출금으로 271,177 천원 요구하고 있음. 민간위탁이 아니기에 별도의 위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관련 조례상 공기업위탁임.

(단위 : 천원)

연도		1차연도 (2023년)	2차연도 (2024년)	3차연도 (2025년)	4차연도 (2026년)	5차연도 (2027년)	합계
세입	사용료	103,333	310,000	310,000	310,000	310,000	1,343,333
	소계(a)	103,333	310,000	310,000	310,000	310,000	1,343,333
세출	관리·운영 위탁비	271,177	669,381	702,850	737,994	774,893	3,156,295
	소계(b)	271,177	669,381	702,850	737,994	774,893	3,156,295
□ 총 비용(a-b)		△160,844	△359,381	△392,850	△427,994	△464,893	△1,812,962

※ 세입 : 조례상 사용료(강습, 대관, 이용료) 적용 / 세출 : 매년 인건비 등 항목 5% 증액

- 향후 5년간 사용료 수입을 13억43백만원으로 추산하고 있고, 5년간 세출예산은 시설관리 사업비로 31억56백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어 18억12백만원의 차액이 일반회계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는 집행기관의 의견임.
-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이며, 최종 의회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임.
- 다만, 조례안 이외의 사항으로 시설관리위탁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다수의 지자체가 체육시설관리를 해당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향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 188호

제안일자 : 2023.6.13.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 1. 수정이유

일부 조문의 적용범위를 보완하고 수정하고자 함

## 2. 주요 수정내용

-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범위 중 일부 요건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9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7항을 삭제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② (생 략)</p> <p>③ 구청장은 구민이 사용료 감면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구민에게 제8조의 사용료를 다음 호의 비율만큼 감면할 수 있다.</p> <p>1. 50퍼센트</p> <p>가.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다만, 막내자녀 기준 만 13세까지 적용한다)</p> <p>나. ~ 라. (생 략)</p> <p>2. 30퍼센트 : 6세 미만의 영유아</p> <p>3. 10퍼센트</p> <p>가.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다만, 막내자녀 기준 만 13세까지 적용한다)</p> <p>나. (생 략)</p> <p>④ ~ ⑦ (생 략)</p>	<p>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p> <p>1. -----</p> <p>가. ----- ----- ----- 13세 ----- -----</p> <p>나. ~ 라. (현행과 같음)</p> <p>2. 30퍼센트 가.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다만, 막내자녀 기준 13세까지 적용한다)</p> <p>나. 6세 미만의 영유아</p> <p>3. -----</p> <p>가. <u>한 자녀</u> ----- ----- ----- <u>자녀 나이는</u> ----- -----</p> <p>나. (현행과 같음)</p> <p>④ ~ ⑥ (생 략)</p> <p>⑦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사용료 감면의 경우 대상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p>	<p>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 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 style="color: blue; text-align: center;">&lt; 삭 제 &gt;</p>

#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9조제3항제1호가목 중 “만 13세”를 “13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을 “한 자녀”로, “막내자녀 기준 만”을 “자녀 나이는”으로 한다.

### 2. 30퍼센트

가.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다만, 막내자녀 기준 13세까지 적용한다)

나. 6세 미만의 영유아

제9조제7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강남구립 체육시설(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기 능
강남스포츠 문화센터	밤고개로 1길 52	대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등 생활체육교실 및 문화교실 운영
강남구민체육관	개포로 28길 47	대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조깅트랙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
대진체육관	개포로 109길 62	배구, 탁구, 댄스스포츠, 배드민턴, 요가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
봉은테니스장	삼성동 75	테니스
포이테니스장	개포동 1274	테니스
구민회관 체육교실	삼성로 154	사물놀이, 댄스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대치동 74	인조잔디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농구장, 배드민턴, 인라인스케이트장, 암벽등반
매봉산 실내배드민턴장	남부순환로 2711	배드민턴, 농구
일원스포츠 문화센터	영동대로 22	암벽등반장, 라켓볼장, 3:3 농구장, 탁구장, 다목적시설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
돌산체육공원	세곡동 산1-7	축구장, 테니스장, 다목적구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8
----------	-----

제출년월일 : 2023. 6. 1.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생활체육과

## 1. 제안이유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저출산 국가위기 상황에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자녀 관련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개정하고, 나이계산 방법이 만(滿)나리로 통일됨에 따라, 나이 관련 조항도 개정함.

또한, 돌산체육공원 설치에 따라 공원 체육시설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장(章) 구분표시인 ‘제1장 총칙’ 문구를 삭제함

나. 두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체육시설 감면율을 10%에서 30%로 조정하고, 한 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감면율을 10%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나이 규정 조항에서 “만” 字를 삭제함 (안 제9조제3항)

다. 강남구립 체육시설 현황에 돌산체육공원을 추가함 (안 별표 1)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7.] [시행일: 2023. 6. 28.]

나. 예산조치 : 271,177천원 (돌산체육공원 운영비)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조례 개정안 : 별첨

(2) 입법예고 (2023.4.28.~5.18.)

- 접수의견 : 조례 상 불필요한 장(章) 구분표시인 ‘제1장 총칙’ 문구 삭제 필요 (그 외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 칙”을 삭제한다.

제9조제3항제1호가목 중 “만 13세”를 “13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을 “한 자녀”로, “막내자녀 기준 만”을 “자녀 나이는”으로 한다.

### 2. 30퍼센트

가.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다만, 막내자녀 기준 13세까지 적용한다)

나. 6세 미만의 영유아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강남구립 체육시설(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기 능
강남스포츠 문화센터	밤고개로 1길 52	대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등 생활체육교실 및 문화교실 운영
강남구민체육관	개포로 28길 47	대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조깅트랙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
대진체육관	개포로 109길 62	배구, 탁구, 댄스스포츠, 배드민턴, 요가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
봉은테니스장	삼성동 75	테니스
포이테니스장	개포동 1274	테니스
구민회관 체육교실	삼성로 154	사물놀이, 댄스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대치동 74	인조잔디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농구장, 배드민턴, 인라인스케이트장, 암벽등반
매봉산 실내배드민턴장	남부순환로 2711	배드민턴, 농구
일원스포츠 문화센터	영동대로 22	암벽등반장, 라켓볼장, 3:3 농구장, 탁구장, 다목적시설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
돌산체육공원	세곡동 산1-7	축구장, 테니스장, 다목적구장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제1장 총 칙</u></p> <p>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② (생략)</p> <p>③ 구청장은 구민이 사용료 감면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구민에게 제8조의 사용료를 다음 호의 비율만큼 감면할 수 있다.</p> <p>1. 50퍼센트</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다만, 막내자녀 기준 만 13세까지 적용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 라. (생략)</p> <p>2. <u>30퍼센트 : 6세 미만의 영유아</u></p> <p>3. 10퍼센트</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다만, 막내자녀 기준 만 13세까지 적용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생략)</p> <p>④ ~ ⑦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p>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 ----- <u>13세</u>----- -----</p> <p style="padding-left: 20px;">나. ~ 라. (현행과 같음)</p> <p>2. <u>30퍼센트</u></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다만, 막내자녀 기준 13세까지 적용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6세 미만의 영유아</u></p> <p>3.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한 자녀</u> ----- ----- - <u>자녀 나이는</u> ----- -----</p> <p style="padding-left: 20px;">나. (현행과 같음)</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강남구립 체육시설(제3조 관련)		[별표 1] 강남구립 체육시설(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기 능		
강남스포츠클럽 문화센터	밤고개로 1길 52	대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등 생활체육교실 및 문화교실 운영		
강남구민체육관	개포로 28길 47	대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조깅트랙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		
대진체육관	개포로 109길 62	배구, 탁구, 댄스스포츠, 배드민턴, 요가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		
봉은테니스장	삼성동 75	테니스		
포이테니스장	개포동 1274	테니스		
구민회관 체육교실	삼성로 154	사물놀이, 댄스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대치동 74	인조잔디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농구장, 배드민턴, 인라인스케이트장, 압벽등반		
매봉산 실내 배드민턴장	남부순환로 2711	배드민턴, 농구		
일원스포츠클럽 문화센터	영동대로 22	압벽등반장, 라켓볼장, 3:3 농구장, 탁구장, 다목적시설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		
<b>돌산체육공원</b>	<b>세곡동 산1-7</b>	<b>축구장, 테니스장, 다목적구장</b>		